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등 안내

1. 관련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540(2018.6.25.)호

2. 우리 부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포함한 지정신청서·운영계획서(붙임1),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실적 현황(붙임2), 응급실 전용 시설 도면 등을 2018.7.20.(금)까지 우리 부(응급의료과)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응급진료권역명과 상이한 경우 소재지 시·도를 통해 제출

** 용량 초과로 정해진 양식의 파일 첨부가 어려운 경우, 붙임파일은 응급의료과 (hellopyj16@korea.kr)와 국립중앙의료원(erevaluation@nmc.or.kr) 이메일로 별도 제출

4. 아울러,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 양식(붙임3)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계획서 양식(붙임4)을 첨부*하오니,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각 시·도, 시·군·구)는 양식을 참고하시어 재지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센터 및 지역기관 운영계획서 양식은 해당 지정권자가 변경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써, 의료기관에서는 지정권자(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가 추후에 진행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어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권역응급의료센터_2019~2021 운영계획서 양식 1부
 2. 기존권역응급의료센터_기존 운영계획서 이행실적 현황 양식 1부
 3. 지역응급의료센터_2019~2021 운영계획서 양식 1부
 4. 지역응급의료기관_2019~2021 운영계획서 양식 1부
 5. (참고)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보건건강과장), 인천광역시(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식의약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노인보건장애인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담당관), 강원도지사(공공의료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의료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국립중앙의료원장

주무관 **박예진** 행정사무관 **이선식** 응급의료과장 **박재찬** 전결 2018. 6. 28.

협조자

시행 응급의료과-3616 (2018. 6. 2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4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553 팩스번호 044-202-3930 / hellopyj16@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